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37호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0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이 되는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의 최소 기준을 1.0으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의 최소 기준을 170%으로 정함.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이메일(kftc1321@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벅크빌딩 7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전화 044-201-5048, 팩스 044-
868-837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